



## EC의 원산지 규정 비교 분석(IV)

### 차례

1. 서언
2. 원산지 규정의 일반개요
  - 1) 비율기준 검증
  - 2) 세번변경 검증
  - 3) 기술적 검증
3. 비특혜원산지 규정
  - 1) 절차
  - 2) 실체법
4. 특혜원산지 규정
5. 반덤핑 측면의 원산지 규정
6. 기타 원산지 규정
7. 결론

### 1) 원산지 규정 정책

“원산지 규정은 그것의 근거법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반드시 차이가 있어야 하는지”라는 물음은 원산지 규정이 단순히 다른 무역차별 조치를 보완하기 위한 것인지, 혹은 차별조치 그 자체로써, 무역정책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의 근거가 되는 문제이다.

이 문제의 분석을 위해서는 원산지 규정의 정책수립과 정책시행에 대한 차이를 구분지어 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정책수립에 있어서, 여기서 조사된 5개국은 실질적으로 특혜 및 비특혜 원산지 결정에 대해 구분을 하고 있으며 일본을 제외하고는 특혜 무역정책들간에 차등을 두고 있다.

특혜 무역제도와 관련, 특혜공여 국가들은 정치적, 경제적 유대관계가 긴밀한 국가들에 게 보다 완화된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이다. 때문에, ACP(African, Ca-

ribbean and Pacific Countries)와 OCT(Overseas Countries and Territories) 국가들에 적용되는 EC 원산지 규정은 공여국 개념과 함께 수혜국간 전적인 누적개념이 허용되며, 반면 EC의 GSP 원산지 규정은 매우 한정적인 지역 누적개념만이 허용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같은 원산지 규정이라도 GSP 수혜국보다 ACP 및 OCT 국가들이 더 쉽게 특혜수혜 조건을 총족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유형의 예로 소위 규정자체의 차별적 염격성은 다음과 같이 TV에 대한 EC GSP 원산지 규정에서 잘 설명되어 있다.

- ① 수입원자재의 가치가 TV 공장도 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수입 부품 비율기준)
- ② CN Code(HS 세번과 유사한 EC의 분류 방법) 8529로 분류되는 원자재(부품)가 TV의 공장도 가격의 5%까지만 사용
- ③ 비원산 원자재가 현지 원자재 가치를 초과할 수 없음.....(부품가치기준)
- ④ CN No 8541의 모든 트랜지스터는 현지 원산이어야 함.

이에 반해 TV에 대한 ACP국들에 대한 원산지 규정은 다음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다.

- ① 사용 원자재의 가치는 TV공장도 가격의 40%를 초과해서는 안됨.
- ② 비원산 자재가격은 원산 자재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그러므로 자이레(ACP국)의 생산업체는 원하는 만큼의 日本產 및 EC產 트랜지스터를 사용할 수 있으나 방글라데시의 경우 TR을 1개라도 사용하면 GSP 혜택의 기회가 없을 것이다.

정책수립차원의 차등과 방법론적인 차별은 바로 원산지 규정이 무역 왜곡효과를 야기 시킨다는 사실에 대한 행정당국의 내재적 인정으로 보인다.

또한 특혜원산지규정이 실질적인 현지산업

발전을 돋기 위한 것이라는 몇몇 공여국들의 정치적 공언은 가식적으로 보이는데 이는 외국 투자자들이 자이레 보다 방글라데시에서 보다 많은 현지 원자재를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공장 설립時 방글라데시보다는 자이레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원산지 규정은 특정국의 외국이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일 것이다.

정책시행면에 있어서 비특혜 원산지 규정의 비중립성은 미국에서 가장 명확히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 행정결정과 법원판결에서 보여주듯이 실질적 변형의 기준은 법령의 정책목적에 따라 다르게 판정되어 왔다.

EC의 비특혜 원산지 규정은 모든 정책적 목적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그러나 Zipper, IC, 복사기 등과 같은 특정 제품별 원산지 규정은 EC 산업에 혜택을 주고 日本 생산업체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되었다.

미국과 EC에서, 비특혜 원산지규정에 대한 무역제한적 해석 가능성은 기준이 분명치 않은 “실질적인 변형”과 “최종적인 실질적 공정” 등의 기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것 같다.

원산지 규정의 협정안(Draft Agreement ; 합의문 초안)은 3년간의 경과기간 이후 모든 조인국들은 모든 경우에 동일한 원산지 규정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비특혜 분야에서 현재 진행중인 미국의 원산지 관련 협의에 결정적인 해답을 제공하고 있다.

관세협력위원회(CCC)의 비특혜 원산지규정 단일화로 아마도 불분명한 미국과 EC의 기준은 폐지되고 CTH Test(세번변경기준)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협정안 자체가 원산지 규정의 입안은 기술적인 사항이라는 그릇된 인식에서 출발하였으며 이로 인해 단일화(Harmonization)를 위한 CCC 협상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으로 보인다.

더우기 협정내용은 특혜 원산지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인데, 특혜원산지 규정을 협정안 범위내로의 포함 가능성과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 특혜 무역블럭의 확대가 협정안 적용에 큰 헛점을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에는 異見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특혜 원산지 규정의 단일화를 이를 몇번의 기회가 무산되었던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결과, 특혜 규정들은 미, EC 정책입안 단계에서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무역, 투자 그리고 수급정책들을 수행토록 사용되어지고 있어 결국 효율적 'Globalization'을 저해하게 된다.

결국 정책수립 차원에서 여기 조사대상 5개국 모두는 원산지 규정을 정책적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협정안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정책시행 차원에서, 미국과 EC의 비특혜 원산지 규정의 모호한 정의는 무역제한적이며 왜곡적인 해석들을 유발시켜 왔다.

그러나 협정안 채택에 이은 CCC의 성공적 단일화는 향후 이러한 문제의 발생을 방지하게 될 것이다.

## 2) 비특혜원산지 규정의 단일화(CCC)

협정案에서는, CCC가 브뤼셀에서 비특혜 원산지규정을 단일화하기로 합의되어 있다. 단일화된 원산지 규정은 저임의 개발도상국에서 저급품을 생산하고 고임의 선진국에서는 고급품을 생산하여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는 다국적 기업에게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생산의 글로벌화 개념).

첨단의 합리적조달 및 생산계획은 이런 다국적 기업들로 하여금 각국의 비특혜 원산지 규정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그러나 향후 3년간의 단일화 일정은 매우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

## 3) 단일화 기준으로서의 CTH 검증

협정안은, "CCC의 단일화 협상이 가능한한 HS 세번 변경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 카 자유무역협정이나 일본의 비특혜 원산지규정, EC 특혜 원산지규정 등과 관련한 경험에 비추어 볼때 비록 이들 3국의 규정들은 CTH 테스트를 우세적으로 사용하고는 있으나, 전적으로 CTH 접근방법을 사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러 경우에 기술적 검증과 비율기준 방법의 혼용이 불가피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CCC 협상이 개시되기 전에 개도국이나 저임금 국가들은 기술검증과 비율검증 방법이 매우 보호주의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며, 또한 미, EC, 日本 등과 같은 주요 국가들은 이미 협상 준비작업에 들어 갔음을 인식하고 자국에 불리한 조항들이 협상과정에서 기정사실화 되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4) 비율 기준 산정 · 방법의 단일화

이 연구는 비율기준 검증시 사용하는 분자, 분모 계산 방법이다. 수입부품 최대 허용비율(수입부품 기준 검증) 또는 현지부품조달 최저비율(현지부품 기준검증) 등과 관련하여 조사대상 5개국간의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명백한 것은, 부분적으로 비율기준 방법에 의존하려는 CCC의 어떠한 단일화 시도도 기본계산 방법의 단일화 실패로 인해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CCC 협상은 이와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C 및 일본의 현지부품과 수입부품 계산방식이 가장 논리적이며, 교또 협약 권고사항을 가장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회자되고 있다.

그러므로 EC 및 일본의 규정은 단일화의 기본 토대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 같다.

## 5) GSP 단일화

수혜국들은 1970년 GSP 제도가 개시된 이래 GSP 단일화 미흡은 GSP 교역에 주요한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20년이 넘도록 GSP 원산지 규정에 대한 단일화를 주장해 왔지만 현재의 보고서는 1992년 현재 공여국들간의 GSP 시행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廣域(호주, 카나다) 또는 挾意(미국, EC, 일본)의 누적개념과, 공여국 원칙의 수용 또는 비수용, GSP 원산지 요건의 强(美, EC, 日), 弱(호, 카)과 같은 근본적 문제들은 수혜국들의 可效用率(Possible Utilization Rate)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 같다.

GSP와 관련하여 방법론적, 실제적 세부내용을 보면 공여국들은 비현실적으로 엄격한 원산지 요건을 재정하여 교묘히 민감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방법론에 있어 미국, EC, 일본은 개발도상국간의 통합에 영향을 주는 한정적인 누적개념에 대해 再考하여야 할 것이다.

GSP 규정의 단일화를 위한 포럼은 UN의 UNCTAD로써 이는 GSP 제도설립과 함께 계속적인 운용안의 개선과 효율성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이다.

최근 UNCTAD 사무국 보고서에는 제한적인 단일화 즉 각종 공정기준과 비율 기준내에서 현존하는 차이의 단일화와, 완전한 단일화 즉 모든 공여국들이 사용하는 공정기준 혹은 비율 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방법 선택간에 구분을 두고 있다.

이 보고서는 잠정적으로 Import Content(수입부품비율)에 의한 비율기준을 그 단순성과 계산 간결성으로 인해 선호하고 있으며, 이것은 아마도 완전 단일화를 위한 최적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이 충분히 검토 되었는지 여부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수입부품비율기준에 대한 문제로서는 우선, 부품이 관

련 공급자(계열사)로부터 수입되었을 경우 수입국 행정당국은 수입부품계산 방법에 상당한 재량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수입부품 가격 책정수준(FOB or CIF)과 비율계산시 사용하는 공통분모(공장도가격 등)에 대한 공여국간 통일성이 없다는 것이다. 효과적인 단일화는 바로 이와 같은 점에서의 합의가 요구되어 진다.

셋째로 EC는 결코 CTH 검증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도 과거 몇년전처럼 공정기준을 부담없이 수용할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측면에서 공정기준이 선택된다면 단일화는 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CTH를 기준으로 한 비특혜 원산지 규정의 단일화 선택과 이를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할 경우 같은 방법으로 GSP의 단일화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럴 경우, UNCTAD는 CCC의 작업결과 뿐만 아니라 CCC 내부 힘의 불균형으로 부터도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즉 CCC 내부에서의 美國, EC, 일본간의 상충된 이해관계는 공여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GSP 원산지 규정보다도 더욱 공정한 규정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비특혜 및 GSP 원산지 규정을 위해 공여국이 동일한 CTH 검증법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는 수혜국들의 큰 승리가 될 것인데 왜냐하면 GSP 원산지 규정이 비특혜 규정보다 엄격해야 한다는 현재의 미국, EC, 일본의 정책의 일대 전환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 6) 자유무역 지대에 대한 여러가지 원산지 규정

GSP의 일방적 특성에 비해, 자유무역 지역은 합의에 의한 것이다. 이것은 원산지 규정을 포함한 계약 내용들이 관련 국가들 사이에서 합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국의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원산지 규정들이 매우 지역주의적이고 회원국 및 블록별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GATT의 Article XXIV 4항은 원칙적으로 자율적 협의를 통해 경제 당사국들간의 긴밀한 통합전개로 자유무역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Article XXIV의 다른 조항들은 관세동맹과 자유 무역지대가 준수할 필요가 있는 여러가지 의무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관세나 지역블럭의 상거래 규정들은 제3국에 대해 기존의 역내 개별국 수준에 있었던 것보다 더 높거나 제한적이어서는 안된다.

Article XXIV의 기본개념은 교역을 증대하고 규제를 없애자는 것이다. FTA와 관세동맹의 일환으로써 체결된 특혜 원산지규정은 비회원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는데, 아마도 매우 엄격한 원산지 규정은 블럭内 회원국들이 특혜를 위해 제3국의 수입부품보다 현지부품을 더 많이 사용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교역을 왜곡할 우려가 많을 것이다. 공여국의 논리는 이러한 블록경제 회원국들이 역내 현지부품을 사용하게 강제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다소 구속력이 부족한 원산지 규정은 무역왜곡이 심하지 않은 반면, 무임 승차자(Free Rider) 문제를 유발시킨다.

가장 좋은 해결방안은 국제적으로 동일한 특혜, 비특혜원산지 규정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UR 협상에서의 EC의 강력한 반대로 '90년대 안으로는 이러한 방안이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 7) A/D 관세 우회에 대한 원산지 규정

“원산지 규정으로 반덤핑관세 우회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론상으로는 수입국이나 혹은 제3

국에서 생산되어 현지 원산지 자격을 획득한 경우, 관련 수입부품이나 제3국 수출품이 덤핑되어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는 충분한 조사 근거가 없는 한, 해당 제품이 A/D 관세에 부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특별히 우회방지 조항을 채택치 않아도 원산지 규정이 우회침투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야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GATT 반덤핑 코드 초안(1991. 12. 20)은 이와 관련, 수입국 우회(Importing-Country Circumvention) 여부를 결정을 할 수 있는 수입국 우회방지규정(Importing-Country Anti-Circumvention Provision)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제3국 우회수출(Third-Country Circumvention)과 관련 同초안은 제3국 우회가 존재하며 덤핑과 그로 인한 피해가 결정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A/D 관세를 소급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제네바에서 EC와 기타국간의 논란이 되고 있는데 EC의 경우 同초안이 EC 비특혜 원산지 규정 적용을 근거로 제3국 우회를 계속 규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한편, 기타국들은 소급 적용을 문제시 하고 있다.

#### 8) A/D 절차시 현지산업 정의에 대한 원산지 규정

A/D 법안을 다루는 EC와 그 밖의 주요 국가들은 현지 산업이 원산지 규정 테스트를 받는 것을 꺼려한다. 따라서 현지산업과 관련한 원산지 문제는 정치적 측면에서 더욱 완화되어 처리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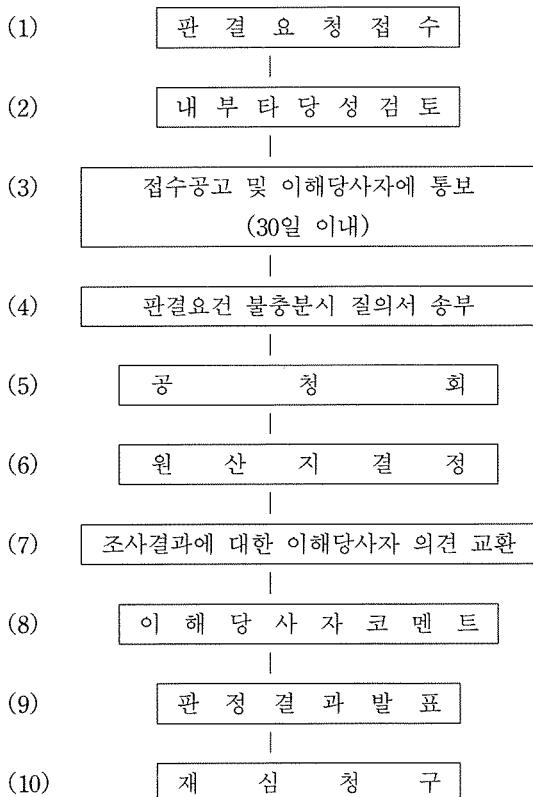
#### 9) 절차상의 개선(Procedural Improvements)

Draft Agreement와 Common Declaration의 새로운 점의 하나는 사전판결 절차이다. 현재 예를 든 5개 국가들은 요청이 있을 경우 원산지에 관한 사전판결을 내려줄 것이나 그 절차가 EC의 경우 매우 시간이 많이 소모되며 호

주 카나다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등 5개국 모두 그 실효성에 다소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행정 당국에 대한 150일간의 행정처리 기한과 공고조건 등을 포함한 Draft Agreement가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따라 위의 5개국은 판결 절차(Ruling Procedure)의 설정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절차는, 미국 재무부의 결정案(Draft

표1 원산지 판결절차(案)



Treasury Decision)의 경우 처럼 이해 당사자들이 최종판결이 취해지기 전에 그들의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등 매우 체계적이어야 한다.

또한 이해당사자들은 제출된 회사의 영업정보 비밀취급 및 공개서류에 대한 접근, 청문회, 판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절차상 권리 등과 함께 판결전에 자신들의 견해를 언급할 절차상의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더우기 이해 당사자들이 행정판결에 대하여 법정에 직접 항소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 언급한 것을 근거로 할 때 표1과 같은 절차가 될 수 있다.

#### 10) 정치 지향적 구성과 제도지향적 구성

이해 당사자들을 절차적으로 보호하며 원산지 결정을 하기위해 당사자 주의적인 법적 절차(Adversarial Legal Process)를 설정하는 것은 원산지 결정 판결의 기본적 특징이 상충된 이해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원산지에 대한 판결은 항상 투자나 부품수급 및 국제교역에 영향을 주기 마련이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어야 하며, 명확하고 비정치적이며 예측 가능해야 한다. 비특혜 원산지 규정에 관하여 국제사회는 정책입안과 시행에 관하여 제도지향적 시스템(Rule-Oriented System)의 초기 단계에 진입해 있다.

그러나 특혜 원산지 규정은 각기의 해당 국가내에서 또는 해당국들 간에 통일성이 없으며, 수입국 실무자들의 정책입안에 임의성이 있는한 합리적 자원배분에 계속적으로 장애를 초래할 것이다.